

CP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준수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이와 상충되는 회사의 규정에 관하여 이 규정이 우선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당국"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예하 기관을 말한다.
2. "공정거래 관련 법규"는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 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 법규를 말한다.
3. "임직원"은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4. “자율준수”는 회사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전반을 감독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자율준수편람”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으로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 자율준수 매뉴얼을 말한다.
7. “자율준수프로그램(이하 “CP”라 한다.)”은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 요소와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8. “CP 주관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좌하여 CP 업무를 주관하여 실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 2 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제 1 절 최고경영자

제4조 (권한)

- ① 최고경영자는 CP 운영에 관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다.
- ② 최고경영자는 CP 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예산과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
- ③ 최고경영자는 CP 의 운영에 관하여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 (의무)

- ①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가 회사의 중요한 가치임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최고경영자는 CP 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적인 보고 권한을 인정하여야 한다.

- ③ 최고경영자는 효과적인 CP 운영 및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CP 운영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④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CP 운영에 관한 기준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 2 절 자율준수관리자

제6조 (선임과 해임)

-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자로 한다.
 - 1. 자율준수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직위와 직급을 가지는 자
 - 2.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운영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 ③ CP 주관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사실 및 권한을 사내·외 이해관계자에게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전달한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 ⑤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CP 주관부서의 장이 자율준수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혹은 이사회 승인으로 새로운 자율준수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CP 업무를 대행한다.

제7조 (권한 및 의무)

-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권

2. 회사 전반에 자율준수를 실행할 수 있는 제도 제안권
 3. 공정거래 법규 및 CP 운영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요구권
 4.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권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 ②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따른 직무 수행
 2. CP의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제8조 (직무)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 수립
2. CP 운영
3. CP 운영 계획, 현황 및 실적을 분기 1 회 최고경영자 또는 이사회에 보고
4. 자율준수 실태에 관한 점검을 반기 1 회 실시하여 최고경영자 또는 이사회에 보고
5. 공정거래 법규 위반 임직원 대한 징계위원회 상정요구
6. 공정거래 법규 및 CP 운영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7. 자율준수에 대한 임직원 교육 실시
8. 자율준수협의회 소집 및 운영
9. 경쟁당국 등과의 협조 및 지원
10. 기타 CP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독립성 보장)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에 관한 업무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에 관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최고경영자 또는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집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가 CP 운영에 관한 기준 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아닌 한 자율준수 관련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 (회사의 지원)

- ①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CP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업무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별도의 예산을 연간 1 억원 이내로 배정받을 수 있다.

제 3 절 자율준수협의회

제11조 (설치 및 구성)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의 추진과 관련한 자문 및 협의기구로서 자율준수협의회를 운영한다.
- ② 자율준수협회의의 의장은 자율준수관리자로 한다.
- ③ 자율준수협회의의 위원은 공정거래 법규 유관 부서의 장 중심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의장이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 ④ 자율준수협회의는 원활한 업무 수행 및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산하에 특별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⑤ 자율준수협회의의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자율준수협회의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12조 (역할)

- ① 자율준수협회의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의 기본방침 설정
 2. 공정거래 관련 법규 동향 파악 및 전파
 3. 자율준수 관련 중요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 및 자문
 4. 기타 CP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 및 자문
- ② 자율준수협회의 내부 조직 및 구성원의 역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자율준수협회의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13조 (운영)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반기 1 회 정기적으로 자율준수협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자율준수협회의 CP 자율준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자율준수협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내용은 자율준수협회의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 4 절 CP 주관부서 및 임직원

제14조 (CP 주관부서)

- ① CP 주관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시 및 통제 하에 회사의 자율준수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 ② CP 주관부서는 자율준수 업무 추진 현황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③ CP 주관부서는 제 2 항의 보고사항 중 회사의 CP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최고경영자 또는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15조 (임직원)

- ① 모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법규 및 CP 운영에 관한 기준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운영에 관한 기준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주관부서의 자문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
- ③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운영에 관한 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이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모든 임직원은 자율준수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제 3 장 CP 의 운영

제16조 (자율준수 의지 천명)

- ① 최고경영자는 회사의 자율준수 문화 조성과 임직원들의 CP 실천을 위하여 자율준수 실천 의지를 지속적으로 천명하여야 한다.
- ②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실천의지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되어 이메일 등을 통해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 ③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 실천 의지를 대외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외부의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도 공지하여야 한다.

- ④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 실천의지가 회사의 핵심 사업목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 (자율준수편람)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조직과 특성에 맞게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개정사항을 분기 1 회 검토하여,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임직원들이 상시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배포 시 고위험부서를 최우선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을 포함한 CP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자율준수편람에 수록하여 모든 임직원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CP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교육의 실시 및 내용)

- ① CP 주관부서는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교육을 실시한다.
- ② CP 주관부서는 임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공정거래 법규 및 CP 운영에 관한 기준에 위반되는 지를 사전에 인지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 ③ CP 주관부서는 고위험부서의 임직원을 최우선으로 하여 집중적으로 교육하며, 필요시 계층별, 분야별로 교육대상 및 내용 등을 차별화하여 실시한다.
- ④ 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절차, 횟수 및 내용은 자율준수 교육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19조 (위험성 평가의 실시 및 관리)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부서별 업무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리스크를 평가하고, 적합한 통제를 통해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위험성 평가를 분기 1 회 실시하고, 리스크 등급은 상, 중, 하의 3 단계로 구분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거래과정에 따라 평가항목을 구분하고, 협력업체, 실무자, 임직원 등 위반 행위자별 평가를 구분한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본 조의 위험성 평가에 따른 리스크 등급이 중 등급 이상의 경우 적절한 통제방안을 강구하여 해당 리스크를 회피, 경감 또는 제거하도록 한다.
- ⑤ 위험성 평가의 구체적인 절차 및 내용은 위험성 평가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20조 (사전업무협의제도)

- 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하여 반기 1 회 CP 주관부서에 검토를 요청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주관부서는 임직원이 업무 수행 중 사전업무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 및 협의하여야 한다.
- ③ CP 주관부서는 임직원과의 사전업무협의 결과를 문서의 형식으로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사전업무협의제도의 구체적인 절차 및 내용은 사전업무협의제도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21조 (내부고발 시스템)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임직원이 공정거래 법규 위반 사례를 발견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내부에 보고할 수 있는 내부고발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 ② 내부고발 시스템을 통한 제보는 회사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전화, 팩스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분 제보자가 타 부서의 보복, 차별,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제보 받은 내용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조작되었는지 판단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위반사항에 대하여 CP 주관부서에 조사를 명할 수 있으며, CP 주관부서는 조사 후 그 내용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내부고발 시스템의 구체적인 절차 및 내용은 내부고발 시스템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22조 (인사제재의 내용 및 절차)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법규 준수여부 점검 결과 적발된 위반 임직원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인사제재 조치를 해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시정조치, 법 위반 방지교육 등을 실행하여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사실을 최고경영자 또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④ 인사제재 내용 및 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23조 (인센티브의 내용 및 절차)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자율준수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였다고 평가되는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할 수 있고,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해당 임직원의 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②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절차 및 내용은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24조 (효과성 평가의 실시 및 관리)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반기 1 회 CP 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CP 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및 개선조치를 최고 경영자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효과성 평가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CP 운영에 관한 집중 개선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효과성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법규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 ④ 효과성 평가의 구체적인 절차 및 내용은 효과성 평가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25조 (문서관리)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에 관한 문서 일체를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분류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 법규와 관련하여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 및 보관되어야 한다.

- ③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최신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주관부서 인원 중에서 문서관리자를 지정하여 문서의 수발, 분류, 보관, 보존, 이관을 담당하게 한다.
- ⑤ 자율준수협의회에 소속된 각 부서는 부서별 문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부서별 문서관리자가 자율준수 관련 문서의 이관, 폐기를 할 경우 사전에 CP 주관부서의 문서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기 타

제26조 (공시)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연 2 회 CP 운영 상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② CP 주관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CP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회사 홈페이지,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파하여야 한다.

제27조 (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기준 또는 지침으로서 제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 (개정)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1. 이 규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4년 11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